

이사회규정

(제정) 2017. 11. 2.

(개정) 2020. 3. 27.

(개정) 2020. 8. 13.

(개정) 2021. 1. 27.

(개정) 2024. 3. 2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권한사항)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,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(선임사외이사)

- ①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(이하 '선임사외이사'라 한다)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에 따라 선임된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
 2.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
 3.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정기이사회를 개최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 10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2. 경영에 관한 사항
 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2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3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5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6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7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
- (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3) 전환사채의 발행
- (4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5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6)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1)-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2)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겸임

5. 기 타

- 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2)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3. 임원의 승진, 미등기임원의 선임, 해임 및 상담역의 위촉, 해촉 등 인사 사항(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제외)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2 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단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두기로 한다.

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2. 감사위원회
3. 경영위원회
4. 보수위원회
5. 투명경영위원회
6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⑦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결의사항 통지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어느 이사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 13 조(관계인의 출석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사회에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에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6 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준법관련 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③ 회의 의사록(서면결의록)과 회의에 부의한 원안은 간사가 보관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6 조(위임)

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당해 사항의 시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.

제 17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